

의안번호	제 2010 - 5 호
의 결	2010. 3. 22.
연 월 일	(제24차 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목 차

별첨 이주형, "전문위원 2팀 회의 논의 자료(초안)"

I. 2팀 제19차 회의

1. 일시·장소

○ 일시 : 2010. 3. 4.(목) 19:00 ~ 20:00

○ 장소 : 대법원 253호 회의실

2. 참석자(4명)

○ 김한균, 박영식, 이주형, 윤정근 전문위원

3. 주요 안건

- 제3차 양형기준 공청회의 대상범죄군 선정
- 전문위원 연구과제 추진계획 검토

4. 회의 요지

가. 제3차 양형기준 공청회의 대상범죄군 선정

(1) 공청회 대상범죄군 선정

- 2팀이 담당할 제2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절도, 마약, 약취·유인, 공무집행방해) 중 2개 범죄군을 제3차 양형기준 공청회의 대상범죄군으로 정하기로 하는데 의견이 일치됨
- 먼저 제3차 양형기준 공청회의 대상범죄로 약취·유인범죄를 포함시키는 데 대하여는 의견이 일치함
- 다만, 절도, 마약, 공무집행방해 중 어느 범죄군을 추가로 포 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의견이 나뉨

- 절도, 마약의 경우 통계분석 시간이 필요하므로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약취·유인과 공무집행방해를 먼저 설정할 경우 절도와 마약을 모두 후반기에 설정하게 되어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됨
- 최종적인 대상범죄군 선정은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하 기로 함

(2) 대상범죄별 과제 분장

○ 제2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 중 2팀 담당 범죄의 주무 전문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정

	주무 전문위원		
절도	박영식	최석윤	윤정근
마약	이주형	윤정근	김한균
약취·유인	김한균	박영식	최석윤
공무집행방해	윤정근	이주형	

나. 전문위원 연구과제 추진계획 검토

○ 이주형 전문위원이 별첨 '전문위원 2팀 회의 논의 자료(초 안)'의 내용을 발표

(1) 제1기 양형기준 점검 및 보완 일정

○ 제1기 양형기준 수정 일정에 대해서도 함께 일정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정 없이 진행하는 경우에 졸속으로 수정안이 나오거나 제대로 수정안이 제시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 전문위원 연구과제에 제1기 양형기준의 운영현황 분석과 그를 기초로 한 최초 양형기준 점검 및 보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연구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하반기에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 전체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함

(2) 통계분석 활용방안

- 제2기 대상범죄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및 제1기 양형기준 적 용효과에 관한 양형자료 조사결과를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함께 분석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전문가와 함께 워크숍 형태로 통계분석에 관한 논의를 진행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됨
- 전체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함

Ⅱ. 제23차 전체 회의

1. 일시·장소

○ 일시 : 2010. 3. 9.(화) 19:15 ~ 22:40

○ 장소 : 대법원 404호 회의실

2. 참석자(10명)

- 수석전문위원, 김용철, 김한균, 김현석, 박영식, 서봉규, 윤정근, 이 주형, 조은경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제3차 양형기준 공청회의 대상범죄군 선정
- 전문위원 연구과제 추진계획 검토

4. 회의 요지

가. 제3차 양형기준 공청회의 대상범죄군 선정

(1) 2팀 담당 대상범죄군

- 2팀이 맡은 대상범죄군(절도, 마약, 약취·유인, 공무집행방해) 중 어떤 범죄군을 제3차 공청회의 대상범죄군으로 선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음
 - 2팀 내에서 상반기 공청회의 대상범죄로 의견이 일치한 약취· 유인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군은, 상반기 공청회 대상으로 잡 을 경우 일정에 쫓겨 부담이 크므로 절도범죄보다는 비중이 적고, 통계분석보다는 규범적으로 고려할 요소가 많은 공무집 행방해범죄를 상반기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 약취·유인이 통계에 잡히는 건수는 많지 않은 대신 가장 규범적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해야 하는 범죄인데, 상반기에 규범적측면이 강한 두가지 범죄군을 함께 다루는 것은 균형이 맞지않는다는 의견
 - 제1기 양형기준 설정 작업시에 이미 43,000건에 달하는 양형 자료조사가 완료되었고, 이번 기초통계자료는 추가 양형자료 조사이므로 추가 양형자료조사 통계가 나오지 않더라도 연구 를 시작하는 데 큰 문제가 없고, 실제로 차지하는 비중이나 상징성 측면에서 볼 때, 절도를 상반기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

는 의견

- 공무집행방해가 규범적인 측면에 있어서나 통계분석을 뽑는 측면에 있어서나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므로 상반기 공청회 의 대상범죄군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하반기에 다루어 도 무방하다는 의견
- 제1기 양형기준에 강도죄가 들어가 있는데, 절도범죄와 강도 범죄가 구체적 행위태양은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같은 형태의 범죄로 보이고 준강도 등이 절도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 으므로 제1기 양형기준이 시행되고 있는 초반기인 상반기에 절도범죄를 다루어서 양형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강도범죄의 적절성을 점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는 의견
-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약취·유인 및 공무집행방해를 상반기 공청회의 대상으로 삼고, 절도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 같 으므로 하반기로 미루는 것이 타당하는 의견

(2) 1팀 담당 대상범죄군

- 1팀이 맡은 대상범죄군(사기, 사문서, 공문서, 식품·보건) 중에서 어떤 범죄군을 제3차 공청회의 대상범죄군으로 선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도 아래와 같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음
 - 사기는 제1기 양형기준의 대상이 되어 있는 횡령·배임과 관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와 함께 전체 범죄 중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인류역사 범죄 중에서 기본이 되는 범죄이므로 사기를 상반기 공청회에 올리는 것이 타당하나, 사문서와 관련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기와 사문서를 하반기 공청회에서 다루는 것도 무방하다는 의견
 - 사기범죄는 유형 분류가 상당히 복잡하고, 문서 범죄와 같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사기범죄와 문서범죄를 나누기가 어려 우므로 사기와 문서범죄는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하반기 공청

회의 대상범죄군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고, 1팀이 맡은 범죄 중에서는 식품·보건범죄를 상반기 공청회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 문서범죄라고 해서 성격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반 드시 공문서와 사문서를 같은 시기에 다뤄야 하는지 의문이라 는 의견
- 사기범죄는 상징성이나 사건빈도가 높고 유형 구분이 어려운 난점이 있기는 하나 기존에 어느 정도 축적된 양형이 있음에 반하여 식품·보건범죄는 대상범죄부터 시작해서 중한 유형이 라고만 되어 있어 양형기준 설정작업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

(3) 논의 결과

- 논의한 결과, 제3차 및 제4차 공청회의 대상범죄군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기로 의견이 모아짐
 - 제3차 양형기준 공청회의 대상범죄군

	1팀	2팀
대상	공문서범죄	절도
범죄	식품·보건	약취·유인

- 제4차 양형기준 공청회의 대상범죄군

	1팀	2팀
대상	사기	마약
범죄	사문서범죄	공무집행방해

○ 대상 범죄군별 주무 전문위원은 각 팀별로 결정하기로 함

나. 전문위원 연구과제 추진계획 검토

(1) 제1기 양형기준 점검 및 보완 일정

- 제1기 양형기준의 점검 및 보완 일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 견이 제시되었음
 - 제2기 양형기준의 마련과 함께 제1기 양형기준의 점검 및 보완도 같이 일정을 잡아서 진행해야 하고, 만약 제1기 양형기준의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할 경우 그 공청회는 제2기 양형기준 공청회와는 독자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
 - 제1기 양형기준의 적용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양형기준의 실무 적용상의 애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한 다음 양형기준의 적정성과 보완 필요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하며, 그 이후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적정한 의견수 렴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는 의견
 - 최초 양형기준이 시행된 초기이므로 제1기 양형기준의 적용실 태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는 주요 과제이며, 운영현황에 대 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토대로 보완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 제2기 이후 양형기준의 설정 대상범죄가 보다 확대되면 그 시 행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작업에 해당되므로, 양형 기준이 시행된 이후 실무 안착을 위한 기간을 부여하도록 어 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일정한 방식으로 시행현황을 점검하여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

(2) 통계분석 활용방안

○ 제1기 양형기준 적용현황 확인 및 제2기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통

계자료조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음

- 현재 제2기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추가 양형자료조사가 진행 중인바, 운영지원단에서는 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그 분석결과를 전문위원단에게 제공하도록 하되, 다만 종전에 시 행된 과거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결과'에 제2기 대상범죄군 에 대한 분석이 유의미한 정도로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를 토 대로 전문위원단 연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관련 통계자료는 가급적 신속하게 전문위원들에게 제공되어야 하고, 전문위원단에서는 통계자료 및 분석내용을 다양한 각도 에서 검토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필 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용역이나 통계분석 전문가인 내부 전문위원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분석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 운영지원단이 제공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 는 운영지원단에서 추후 검토하기로 함

(3) 제1기 양형기준 적용현황 확인 보고

- 제1기 양형기준 적용현황 확인 보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양형기준 적용현황의 정기적 확인 및 보고는 운영지원단의 고 유 업무이므로 운영지원단은 일정기간의 양형기준 운영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고, 전문위원단은 이를 토 대로 나름대로 새로운 통계분석의 틀 등을 가지고 별도로 전 문위원 연구과제로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운영지원단에서 현재 최초 양형기준 시행경과에 대한 분석을 시행 중인바, 그 분석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문위원단에 분석 결과를 송부하고, 전문위원들이 위 분석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경우 그 의견을 취합한 후 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하고, 보고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야 한다는 의견

- 운영지원단이 최초 양형기준 적용현황을 확인하여 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기 전에 신속하게 전문위원들에게 위 적용현황 확 인결과를 제공하여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다양한 관점에서 이를 검토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금번 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제1기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보고도 사전에 전문위원 회의를 통하여 검토를 한 후에 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Ⅲ. 향후 일정

○ 전문위원 제24차 전체회의는 양형위원회 제24차 회의 결과를 참 조하여 추후 개최하기로 함